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97. 2
- 다. 상정일자 : '97. 2. 25 (제5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설명자 : 건설과장 송기채
- 나. 제정이유
 - '95. 12. 6 법률 제4993호로 풍수 재해 대책법이 자연 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되면서 우리군의 수방단 조직등의 관련 조례안이 동법령에 포함되었기 화순군의 수방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키 위함.
- 다. 주요내용
 - 금회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방단의 임무를 안 제2조에 규정하여 재해사전대비 및 재해지역 주민대피유도등 재해응급대책과 매년 5월 25일 방재의 날 행사를 참여하며 안 제3조에 수방단의 조직을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방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을 중심으로 17세 이상 60세 이하인자로 하고, 고교생 및 대학생·군인·경찰관은 수방단원에서 제외했으며,
 - 수방단원은 본인의 동의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안 제4조의 수방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며 안 제5조의 수방단 편성은 본부 및 경계반 10명내외, 복구반 30명내외, 구호반 10명내외로 편성하며 수방단의 소집 및 편성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근성)

○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수방단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절차상 화순군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생 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첨부 :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 안	97 - 10
번 호	

제출년월일 : 1997. 2. 4.
제 출 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1995. 12. 6 전문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화순군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수방단의 임무 (안 2 조)

수방단은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재해응급 대책, 방재의 날 행사참여 및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을 수행

- 수방단의 조직 (안 3 조)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군수가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 수방단의 편성 (안 5 조)

- 본부 및 경계반 : 10명 내외
- 복 구 반 : 30명 내외
- 구 호 반 : 10명 내외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화순군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3. 법제36조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4. 법제23조제3항과 영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 참여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 3 조 (조직) ①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3. 기타 군수가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제1항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 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제 4 조 (단장) ① 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②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여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 5 조 (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반별 임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 10명 내외

- 가. 주민대피 유도
- 나. 재해유관기관의 연락유지
- 다.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 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 마. 기타 다른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복구반 : 30명 내외

- 가.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 · 정비
- 나.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 다.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 라. 재해지구의 정리 · 정돈

3. 구호반 : 10명 내외

- 가.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 나. 사망자 · 부상자등 인명피해자 조치
- 다.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
- 라.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

제 6 조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① 군수는 영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 7 조 (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